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중 개정규칙 (안)

의안 번호	239
----------	-----

발의년월일 : '93. 6. 14

발 의 자 : 운영위원장

□ 제안경위

1. 1993. 5. 3 제88회 임시회 폐회중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개정 필요성·논의
2. 1993. 6. 14 제90회 임시회 제2차 운영위원회에서 오 운균의원의 동의와 김경희 의원의 찬성으로 의안 성립

□ 제안이유

1. '91. 7. 9 제정 이후 의회사무처 직제규칙 개정에 따른 변경 사항 개정
2.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및 처리절차 명시로 운영 합리화

□ 주요골자

1. 의회사무처 직제 개정에 따른 명칭 개정
2. 의원 청가 신청에 따른 허가 절차 개선 (안 제7조)
3. 의안이 2개 위원회 이상 관련시 소관 상임위원회 지정 및 처리절차 명기
(안 제21조)
4. 의안 및 예산안 제출권자에 교육감을 삽입

□ 예산사항 : 없음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개정규칙안

충청북도의회 회의규칙 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 중 "의회사무국"을 "의회사무처"로 한다.

제3조 제2항 중 "사무국장"을 "사무처장"으로 한다.

제7조(제7조 제2항)에 단서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다만, 폐회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하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.

제21조에 제3항, 제4항, 제5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위원회에도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. 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.

④ 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

⑤ 소관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4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 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 수 있다.

제27조 제2항 중 "도지사"를 "도지사 또는 교육감"으로 한다.

제28조 중 "도지사에게"를 "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"로 한다.

제51조 제1항 중 "사무국장"을 "사무처장"으로 한다.

제58조제2항 중 "도지사"를 "도지사 또는 교육감"로 한다.

제68조제1항 중 "도지사로 부터"를 "도지사 또는 교육감으로 부터"로 한다.

제73조제4항 중 "도지사에게"를 "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"로 한다.

제74조제1항 중 "도지사에게"를 "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"로 하며, 제2항 중 "도지
사는"을 "도지사 또는 교육감은"으로 한다.

제94조 (시행규정) 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이 규칙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훈령으로 정할 수 있다.

부 칙

이 규칙은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·구 조문 대비표

현 행	개정안
<p>제2조 (등록) 의회의원은 임기초에 당선증서를 <u>의회사무국</u>에 제시하고 등록하여야 한다.</p> <p>제3조 (의석배정) ① (생략) ②총선거후 의장이 선출되기 전에 의석은 <u>사무국장</u>이 지역구 순서에 따라 임시로 정한다.</p> <p>제7조 (청가 및 결석) ① (생략) ② 의원의 청가는 5일 이내의 것은 의장이 허가하고 5일을 초과하는 것은 의회에서 이를 허가한다. <u>(신설)</u></p> <p>제21조 (상임위원회 회부) ① ~ ② (생략) <u>(신설)</u></p>	<p>제2조 (등록) <u>의회사무처</u>..... 제3조 (의석배정) ① (현행과 같음) ②..... <u>사무처장</u>..... 제7조 (청가 및 결석) ① (현행과 같음) ②..... <u>다만, 폐회중에 신청한 청가는 5일을 초과하는 경우에도 의장이 허가하며 본회의에 이를 보고한다.</u></p> <p>제21조 (상임위원회 회부) ① ~ ② (현행과 같음) <u>③</u>의장은 소관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하는 경우에 그 안건이 다른 위원회의 소관사항과 관련이 있다고 인정할 때에는 관련 위원회에 이를 회부하되 소관위원회와 관련위원회를 명시하여야 한다.</p>

현 행	기 정 안
	<p>안건이 소관위원회에 회부된 후 다른 위원회로부터 회부요청이 있는 경우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도 또한 같다.</p> <p>④ 의장이 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관련 위원회에 안건을 회부할 때에는 관련위원회가 소관위원회에 그 의견을 제시할 기간을 정하여야 하며, 필요한 경우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.</p> <p>⑤ 소관위원회는 관련 위원회로부터 특별한 이유없이 제4항의 기간내에 의견의 제시가 없을경우 바로 심사보고를 할수있다</p>
제27조 (의간 동의의 철회)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생략) ② <u>도지사가 본회의 또는 위원회에서 의제가 된 도지사 제출의 의안을 수정 또는 철회하고자 할 때에는 본회의, 또는 위원회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.</u> 	<p>제27조 (의간 동의의 철회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① (현행과 같음) ② <u>도지사 또는 교육감이</u> <u>도지사 또는 교육감</u>
제28조 (번안) 번안동의는 본회의에서는 의안을 발의한 의원이 그 의안을 발의할 때에 찬성자 3분의 2이상의 동의로, 위원회에 있어서는 위원의 동의로 발의한다. 그러나 본회의에 있어서는 안건이 <u>도지사에게</u> 이송된 후에는 번안할 수 있으며 위원회에 있어서는 본회의의 의제가 된 후에는 번안할 수 없다.	<p>제28조 (번안)</p> <ul style="list-style-type: none"> <u>도지사 또는 교육감에게</u>

